농대여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농대여학생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농대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그이익을 실현하는 유일한 대표기구이다. 학내에 존재하는 반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타파하고 여학생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여학생 자치활동기구이다. 나아가 사회에 있어 여성에 대한 제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조적 모순의 인식과 현실극복에 대한 실천력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책임질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함으로 목적을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 농과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한다.단,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자격이 중지된다.

제 4 조 (회원의 관리)

(1) 본 회의 회원은 본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에 대한 의사개진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제반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알권리가 있으며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기구에 대하여 100인 이상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 ,수리 ,결과를 통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의 기타권리는 기타 농대 여학생회의 관련조항을 따른다.

제 5 조 (회원의 임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하며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 6 조 (기구) 본 회의 제2조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올바르고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학생총회, 운영위원회,집행부,과여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장 여학생 총회

제 7 조 (구성) 여학생 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그의장은 농대 여학생회장으로 한다.

제 8 조 (권한)

(1) 여학생회 총회는 여학생회칙의 전면 개폐 및 여학생 단체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논의,결정한다.

(2) 여학생 총회는 여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탄핵권을 가진다.

제 9 조 (소집) 여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회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대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농대 여학생회장 ,운영위원회 및 농대 여학생 대표자 외의 또는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농대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긴급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대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3) 여학생총회의 소집은 4일전에 공고한다.단,2항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 10 조 (의결 및 탄핵 정족수)

(1) 여학생총회의 의결은 전체 회원의 1/15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농대여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결정은 전체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농대 여학생대표자회의

제 11 조 (지위) 단대여학생대표자회의는 여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 12 조 (구성) 여학생대표자 회의는 각과 여학생회장(없을시 여학생부회장,여연짱),각학년 여학생대표로 구성된다.

제 13 조 (의장)

(1) 의장은 농대여학생대표자 회의 운영전반을 담당하며 대외적으로 전여대회를 대표한다.

(2) 임기는 당해 3월에서 다음해 2월 까지로 한다.

(3) 의장은 농대여학생회장까지 겸임한다.

제 14 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와 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 및 농대여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단,긴급을 요구할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업무) 농대 여학생대표자 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본 회의 활동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결정

(2) 회칙 및 시행세칙개정 에 대한 사항결정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안 통과

(4) 농대 여학생회 부서장 인준

제 16 조 (신분보장) 농대여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7 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 18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농대여학생회장 ,각과 여학생회장 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단대여학생회장으로 한다.

제 19 조 (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을 검토,심의,조정한다.

(2) 본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검토,심의,조정하여 편성하고 농대 여학생 대표자 회의에 제출하고 업무 및 재정 결산보고를 행한다.

(3) 회칙개정에 발의권을 갖는다.

(4) 여학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기타 운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6) 농대여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이 어려울 시 회칙개정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20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며 그시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연다.

제 21 조 (의결)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집행부

제 22 조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3 조 (구성)

(1) 집행부는 농대 여학생회장 및 농대여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부 부장으로 구성되며 각 부는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2) 각 부의 부장은 농대 여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24 조 (체계 및 업무)

(1) 총무부 - 회계와 각종 회의에 대한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2) 기획부 - 운영 및 행사에 대한 기획을 담당한다.

(3) 선전부 - 본 회의 사업 공개,보고 및 선전사업을 수행한다.

(4) 편집부 - 신문 발간 및 제반 출판 사업을 담당한다.

(5) 여연부 - 여연연구 단위를 통한 과 여연에 커리 공급과 내용 지도

(6) 탁아부 - 비영리 민간 탁아소 지원 활동

(부장의 권한 및 업무)

집행부는 각 부장은 농대 여학생 대표자 회의,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과 아울러 양기구의 요청이 있을 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 6 장 과 여학생회

제 25 조 (지위)

(1) 각 과여학생회는 과 전 여학생의 대표기구이다.

(2) 각 과여학생회는 농대여학생회의 산하기구이다.

제 26 조 (구성) 과여학생회는 과의 여학생전체로 구성된다.

제 27 조 (회장)

(1) 과 여학생회장은 과여학생회를 대표하며 단대여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2) 과 여학생회장은 본 회칙 제 19 조에 의거하여 과 여학생 전원이 선출한다.

(3) 과 여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28 조 (회칙) 과 여학생회는 단대여학생회의 회칙에 위반되지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만들어 이에 따라 조직하고 활동한다.

제 29 조 (업무 및 권한) 과여학생회는 과여학생회칙에 의해 해당 과여학생회의 모든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 8 장 재정

제 30 조 (재원) 단대여학생회의 예산은 학생회비와 보조비로 충당한다.

제 31 조 (회계년도) 전항의 회계연도는 2기로 나누어 각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편성한다.

제 32 조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보고)

(1) 재정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며 인출과 집행은 여학생회장의 결재를 따른다.

(2)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일체의 경비를 영수증에 첨부하여야 하며 각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배치하여 경비일체를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장 선거

제 33 조 본 회의 선거는 농대 학생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 10 장 회칙개정

제 34 조 (발의)

(1) 본 회의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

(2) 운영위의 2/3의 발의

(3) 위원장의 발의

제 35 조 (공고) 재정발의안을 농대여학생 대표자 회의 의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7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농대여학생대표자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7 조 (공포) 농대여학생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된 개정발의안은 농대여학생회장이 게시장소에 3일이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효력의 발생) 본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관례 및 시행세칙의 준용) 기타 이 회칙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기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3 조 (의사진행세칙)

(1) 정족수 - 선거 미실시로 인한 현지 대의원 부재등 사고로 인한 불참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2)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① 안건상정

②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

③ 질의 및 답변

④ 토론종결

⑤ 원안에 대한 표결

(3)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②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후 발언의 여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③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진행요원에게 신청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 발언 신청자 중 찬반 1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④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로 제한한다.

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위원들로 구성되는 의사조정회의를 처리한다.